

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(한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59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한 신, 강석주, 박승진,
박춘선, 박칠성, 봉양순,
송재혁, 왕정순, 이영실,
이용균, 이원형, 임규호,
정준호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수의사법 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 사항이 되었으므로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표시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수의사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

폐지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「수의사법」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 사항이 되었으므로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표시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